

# NEWSLETTER

March 2024

ESG Group

## CONTACT



변호사 설동근

T: 02.772.4881  
E: [tongkeun.seol@leeko.com](mailto:tongkeun.seol@leeko.com)



변호사 김홍균

T: 02.6386.0899  
E: [hongkyun.kim@leeko.com](mailto:hongkyun.kim@leeko.com)



변호사 김상민

T: 02.772.5954  
E: [sangmin.kim2@leeko.com](mailto:sangmin.kim2@leeko.com)



연구위원 김수연

T: 02.6386.6371  
E: [suyeon.kim@leeko.com](mailto:suyeon.kim@leeko.com)

## EU 공급망 실사지침(EU CSDDD) 관련 최근 입법 동향

### 1. 입법 경과

EU 집행위원회가 2022. 2경 최초 발의한 「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EU 공급망 실사지침, 이하, **EU CSDDD**)는 지난 두 해 동안 이사회와 의회 수정안을 거쳤고, 의회와 이사회가 2023. 12. 13. 잠정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경 당초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되었던 EU 27개국 대사급 상주대표회의에서 최초 부결됨에 따라 위 법안의 존폐론이 대두되었습니다. 독일의 자유민주당(FDP)이 주축이 되어 기업 활동 위축 우려를 이유로 투표에서 기권을 하였고,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가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협상 끝에 'EU CSDDD'(이하, **최종안**)는 3. 15. 적용대상 기업 등이 대폭 완화되는 조건으로 상주대표회의에서 극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2. 적용대상

당초 집행위원회안과 이사회안에서는 'EU CSDDD'의 적용대상을 EU기업과 EU 역외기업으로, 또 다시 연간 평균 근로자수와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Group 1, Group 2로 나누었고, Group 2에 해당하는 기업은 순매출액의 최소 50%가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하여야 적용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아래 표 참고). 여기서 고위험산업군이란 섬유, 농업, 임업, 어업, 광물과 관련된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인권·환경 위험이 높은 산업군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적용대상의 구분에 따라 집행위원회안과 이사회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Group 2에 대하여 'EU CSDDD'에 따른 실사무무를 완화하였고, 해당 기업의 산업 부문 중 고위험산업군에 한정하여서만 실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종전안			
구분		평균 근로자수	순매출액
EU 기업	Group 1	500명 초과	전세계 순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초과
	Group 2	250명 초과 ~ 500명 이하	전세계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이중 2천만 유로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EU 역외 기업	Group 1	N/A	EU역내 순매출액 1억 5천만 유로 초과
	Group 2	N/A	EU역내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이중 2천만 유로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Group 1, 2의 구분, 즉 고위험산업군이라는 개념을 폐지하고, EU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자수 기준과 순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용대상 기업의 수를 당초 예상 대비 30% 수준(전체 EU기업의 0.05% 수준)으로 대폭 경감시키는 한편, 기업분할 등을 통해 'EU CSDDD'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최종안의 근로자수와 순매출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나, **연간 평균 근로자수(EU 기업 한정)와 순매출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EU CSDDD'의 적용대상**이 되어 실사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안		
구분	평균 근로자수	순매출액
EU기업	1,000명 초과	전세계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초과
EU 역외기업	N/A	EU 역내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초과

### 3. 실사 의무의 내용

최종안에 따른 'EU CSDDD'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적용대상 기업**)은 **실사 의무를 내재화**하고(제5조), 자신과 자신의 자회사, 활동사슬(chain of activities)과 관련된 협력업체들(business partners)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한 다음 상호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제6조 및 제6a조). 또,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예방·완화**하여야 하고(제7조), 실제적 부정적 영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소·최소화**하여야 합니다(제8조).

한편, 적용대상 기업은 **고충처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제9조), 인권·환경에 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예방·제거와 관련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제10조), 그 **실사업무 이행내용을 최소 12개월마다 공시**하여야 하며(제11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채택**하여야 합니다(제15조).

위 각 조항들의 세부 내용은 저희 법무법인이 지난 2023. 9. 이사회안을 토대로 발간한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핵심 매뉴얼**』(이하, **LK 매뉴얼**)과 아래 4.항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최종안에서의 주요 변경사항

최종안에서도 위 3.항과 같은 실사의무의 골자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만,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변경사항
공급망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위원회안과 의회안에서는 가치사슬(value chain)을 기준으로 공급망을 정의하였으나, 최종안은 이사회안과 마찬가지로 활동사슬(chain of activities)을 기준으로 공급망을 정의함.</li> <li>■ 최종안 내 '<b>활동사슬</b>'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기업의 <b>업스트림(upstream)</b> 협력업체들(business partners)이 수행하는 디자인, 추출, 조달, 제조, 운송, 보관 및 원자재 제품 또는 부품의 공급,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포함하여 기업의 물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활동 및</li> <li>(ii) 기업의 <b>다운스트림(downstream)</b> 협력업체들(business partners)이 기업 또는 기업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물품의 유통, 운송, 저장과 관련된 활동</li> </ul> </li> <li>■ 이처럼 최종안은 (i) 활동사슬의 정의로부터 다운스트림 내 제품 폐기를 삭제하였고, (ii) 금융기관과 관련하여서는 업스트림만 포함시키고 다운스트림을 삭제함.</li> </ul>

공시 의무 및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CSDDDD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음.</li> <li>중전 안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Group 1 기업에만 부과하고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Group 1, 2 구분을 삭제함에 따라 적용대상 기업 전체가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담하게 됨.</li> <li>대신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최종안은 EU CSRD에 따른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EU CSDDDD에 따른 공시 의무와 기후변화 대응 의무 이행이 면제됨을 명시함.</li> </ul>
민사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용대상 기업이 인권·환경 위험을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청구권자, 소멸시효 등을 회원국들이 자국법에 기초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은 최종안에서도 유지됨.</li> <li>다만, 최종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 이상으로 정하되 자국법에 따른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함.</li> <li>또, 최종안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게 소 제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마련하도록 하였음.</li> </ul>
부정적 인권·환경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정적 인권·환경 영향의 기준을 Annex I을 통해 열거하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고, Annex I은 주요 인권·환경 관련 국제조약들로 구성되어 있음.</li> <li>단, 최종안은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취약 그룹과 핵심 ILO 협약에 관한 내용,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삼림벌채(deforestation)와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s)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li> </ul>
부정적 영향 식별에 따른 계약관계의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안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종료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함.</li> </ul>
이해관계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안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어 실사 과정 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의 시기와 방식을 규율하고 있음.</li> </ul>
이사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안에서는 이사(director)의 선관주의 의무와 실사과정 감독 의무가 삭제됨.</li> </ul>

## 5. 법안 통과 예상시점 및 적용시기

현 EU 의회의 회기는 다가오는 EU 의회 선거일로부터 2달 전인 4월경 종료될 예정인 바, **최종안은 법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해 4월 EU 의회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최종안에 의하면, 'EU CSDDDD'는 EU 관보(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그 적용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최종안에 따른 적용시기		
	구분 (평균 근로자 수 및 순매출액 기준)	적용시기 (EU CSDDDD 발효일로부터 기간)
EU기업	5,000명 초과 & 전세계 15억 유로 초과	3년 후 (단, 공시의무는 2028. 1. 1. 이후 발생)
	3,000명 초과 & 전세계 9억 유로 초과	4년 후 (단, 공시의무는 2029. 1. 1. 이후 발생)
	1,000명 초과 & EU 내 4억 5천만 유로 초과	5년 후 (단, 공시의무는 2029. 1. 1. 이후 발생)
EU 역외기업	EU 내 15억 유로 초과	3년 후 (단, 공시의무는 2028. 1. 1. 이후 발생)
	EU 내 9억 유로 초과	4년 후 (단, 공시의무는 2029. 1. 1. 이후 발생)
	EU 내 4억 5천만 유로 초과	5년 후 (단, 공시의무는 2029. 1. 1. 이후 발생)

그러나 **최종안에 따른 적용대상 기업과 적용시기가 당초 집행위원회안보다 대폭 완화되었을 지라도, 적용대상 기업의 공급망(활동사슬) 내에 있는 기업이라면 실사 대상기업(이하, 실사 대상기업)으로서 실사 요청에 응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EU向 거래를 하는 적용대상 기업과 실사대상기업 모두 오는 4월까지 EU 의회 내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인 공급망 실사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급망 실사 준비와 관련하여서는 저희 법무법인이 'EU CSDDD'의 인권·환경 기준 등을 토대로 직접 개발한 **조직, 관리체계 및 보고 관련 지표와 인권·환경 지표**(LK 매뉴얼 제34면 이하 참조)를 참고하여 귀사의 대응 현황을 점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ESG 그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체계 구축 및 실사이행을 포함한 다양한 ESG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문 실적을 인정 받아 특히 2023년에는 Asian Legal Business에 의하여 한국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Asia's Top 15 ESG Law Firms for 2023"으로 선정되었고, 2024년에는 저희 그룹의 설동근 변호사가 Asia Legal Awards 2024에서 "올해의 ESG 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ESG 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p>1</sup> 예컨대, 개별 기업 자체로서는 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연결재무제표를 채택하였거나 채택하여야 하는 경우 위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룹의 최종회사가 EU CSDDD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sup>2</sup> 자세한 내용은 LK 매뉴얼과 최종안 원문 참조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